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뢰탐지·제거의 대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뢰대응활동 관련 홍보 및 교육(안 제2조)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에게 지뢰 관련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며,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기본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행계획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확정하도록 함.

다.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범위를 정함.

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의 지정조건, 대행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 법인 또는 단체의 장비·인력 및 자본 등의 구비 조건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의 대가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바. 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5조)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00.00~0000.00.0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뢰대응활동 관련 홍보 및 교육) ①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확인지뢰, 유실(流失) 지뢰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부대와 협조하여 지뢰 관련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 등의 탐지·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 교육을 대행하

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 및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본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통보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의 7월 말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의 9월 15일까지

③ [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6항](#) 및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의 공고는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

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뢰제거 대상지역(해당 지역 작전지휘관이 지뢰등의 제거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예산 소요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 및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사업별 시행시기 또는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산림청

9. 그 밖에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란 다음 각 호의 시·도를 말한다.

1. 경기도

2. 강원특별자치도

3. 인천광역시

4.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시·도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법 제2조제5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활동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지뢰대응활동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④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활동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활동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활동위원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과장급 공무원
 3. 합동참모본부·각 군에서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령급 장교
 4.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국방부·군 전문가(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조제5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⑨ 실무위원회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개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활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활동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한 내용을 활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활동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위원은 본인이 속한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해임) ①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활동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조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인력 및 자본 등”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 절차 및 방법) ①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자본·시설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및 소요되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현장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인력의 보유상황
2. 장비·시설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 전날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의 연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며 지정연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 전날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⑦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자는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⑧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뢰등의 탐지·제거의 품질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취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지뢰등의 탐지·제거 대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3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 탐지·제거가 실행계획, 지뢰대응활동표준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뢰제거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감독자의 임무·선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14조(지뢰탐지·제거 대행계약의 해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제거

2. 제13조에 따른 지뢰제거감독자의 선임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군 소속 부대의 장(장성급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뢰탐지·제거의 대행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조건(제10조 관련)

구분	내용
1. 장비	가. 지뢰등 탐지기 1) 지표면하 깊이 15cm 위치한 지뢰(M14 대인지뢰 등)를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탐지기 10대 이상(금속 및 비금속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2대 이상 포함) 2) 지표면하 깊이 3m에 위치한 105mm 포탄을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탐지기 2대 이상 나. 작업현장에 응급처치를 위한 물자·장비 다. 기록 및 위치 표시 장비(GPS, 각도기, 나침반, 불발탄 발견 표시 등) 라. 운용되는 팀원 수의 1.2배 인원이 착용할 수 있는 개인방호장비(PPE) 마. 개인 간 무선통신 장비 바. 수목을 안전하게 절단할 수 있는 굴착기용 원목 절단기 2대 이상 사. 제거지역의 경계표식, 위험경고표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표지물
2.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상시 운용하는 사무실

3. 인력	가. 국내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 수료 후 2년 이상 지뢰제거 실무경력(현장 지뢰제거 경력 1년 이상 포함)을 갖춘 관리자 1인 이상 나. 국내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지뢰제거 실무경력(현장 지뢰제거 경력 6개월 이상 포함)을 갖춘 품질관리원 1인 이상 다. 국내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지뢰제거 실무경력(현장 지뢰제거 경력 6개월 이상 포함)을 갖춘 지뢰제거안전관리자 1인 이상 라.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지뢰제거 팀.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지뢰제거 실무경력(현장 지뢰제거 경력 6개월 이상 포함)을 갖춘 팀장 1인 이상 2) 국내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을 수료한 지뢰제거원 6인 이상
4. 자본	자본금 5억원 이상
비고 1. 제거지역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직책별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2. 장비·시설·인력의 적격여부 확인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뢰제거 관련 실무경력(현장 지뢰제거 경력과 기타 지뢰대응활동 관련 업무 경력을 의미한다). 5. 지뢰제거 관련 실무경력 기간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1호	30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
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	법 제28조	200

고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에 착수한 자	제2항제1호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2호	200
마.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3호	200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5호	200
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6호	200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7호	200

지뢰등 탐지·제거 대행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구분	☐ 신규 ☐ 연장				
신청인	명칭 또는 상호		설립일자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 E-mail)		
인력	총 계 ()명	관리자		명	
		품질관리원		명	
		지뢰제거안전관리자		명	
		팀장		명	
		지뢰제거원		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뢰등 탐지·제거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자본·시설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방부)		처리기관 (국방부)		처리기관 (국방부)		

210mm×297mm[백상지 120g/㎡]

제 호

지뢰등 탐지·제거 대행자 지정서

1. 명칭 또는 상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법인등록번호:
5. 지정연월일:
6. 지정조건:
7. 유효기간:

위 법인(단체)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또는 제11조제6항 따라 지뢰등 탐지·제거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직인

재 결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재 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손실 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의 계산 및 그 내용			
협의 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시설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895